

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일반사항	① 시설자명			
	② 무선국명 및 호출명칭		③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	
	④ 안테나공급전력의 합		⑤ 주파수 대역	
	⑥ 무선국 주소			
	⑦ 설치장소의 구분 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지역구분에 따릅니다)	[] 주거지역 [] 상업지역 [] 공업지역 [] 관리지역		
측정결과	⑧ 측정단위의 구분	⑨ 전자파강도 측정기준	⑩ 측정값	⑪ 노출지수
	[] 전력밀도(W/m ²)			
	[] 전기장강도(V/m)			
	[] 자기장강도(A/m)			

「전파법」 제47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를 보고
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자

(서명 또는 인)

○○전파관리소장 귀하

기재요령

- ④란: 해당 무선국의 허가받은 또는 신고한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을 적습니다.
- ⑤란: 해당 무선국에서 발사하고 있는 전체 주파수 대역을 적습니다.
- ⑨란: 「전파법」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상의 "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 측정기준"을 적습니다.
- ⑩란: 해당 무선국에서 측정한 전자파강도 중 최대치인 값을 의미합니다.
- ⑪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.

－ 측정단위가 전력밀도인 경우: 노출지수 = 측정값 ÷ 전자파강도 측정기준

－ 측정단위가 전기장강도이거나 자기장강도인 경우: 노출지수 = (측정값 ÷ 전자파강도 측정기준)²

※ 보고자 제출서류: 전자파강도측정기준에 따른 전자파강도측정결과서 1부